

대구대학교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거 조기졸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및 시기) ① 5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조기졸업 하는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소속 대학장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졸업학기 기말고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기졸업 포기원을 제출한 자와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졸업예정자 명단에서 제외한다.

② <삭 제>

② 학·석사 연계과정 선발대상자는 학·석사연계과정운영에관한내규에 따른다.

제3조(조기졸업요건)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업성적 총평점평균이 4.2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석사 연계과정자는 학·석사연계과정운영에 관한내규에 따른다.
2. 6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대학별 졸업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졸업논문에 합격하여야 한다.
5. 교육과정별 졸업사정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4월 2일부터 시행하되,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 제3호의 법과대학과 사범대학의 150학점과 제2조 제4호의 졸업자격영어시험은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